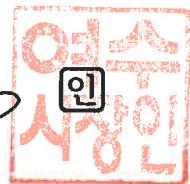


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역아동
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2 월 30 일

여 수 시 장 2022.12.30



·여수시 조례 제1829호

붙임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
정 조례 1부.

**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**

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4. 종사자 역량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비

9.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사업비의 지원)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 4. 종사자 교육비 5. ~ 7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사업비의 지원)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종사자 역량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. ~ 7. (현행과 같음) 8.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비 9.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